

##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3. 21.(월)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서면결의 대상 안전 확대에 관한 건 - (2011-17-059)

-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회 상정 안전 중 토의를 요하지 아니 하는 3개 사항을 서면결의 대상 안전으로 추가하기 위해 마련된 동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서면결의 대상 안전으로 추가된 3개 사항 >

- ① 위원회 규칙·고시 제·개정안 중 보고안전으로 대면회의 상정 후 입법절차를 진행한 결과,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의결안전
- ② 상위 법령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고시로 하향입법하거나, 신청 절차·서식 등 단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
- ③ 국제표준 변경내용을 그대로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무선설비 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2) 방송편성책임자 공표·신고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2011-17-060~064)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편성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책임자가 아닌 자를 공표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방송사업자 별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 >

사업자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문화방송(주)	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500만원
충주문화방송(주)	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500만원
한국방송공사	편성책임자 공표 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원
(재)CBS	편성책임자 공표 의무 위반	과태료 250만원
(재)불교방송	편성책임자 공표 의무 위반	과태료 250만원

**3) 방송 운용시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2011-17-065)**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방송운용 허용시간을 초과한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원안대로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허가조건 위반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한국방송공사(KBS 2TV) 위반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방송 운용 시간을 초과해 운용하고, 사후 변경 승인 신청 기한(3일) 내 미신청
-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위반

**< 초과 편성 세부 내용 >**

프로그램명	방송일자	비고
성탄특집 유희열의 스케치북	'10. 12. 25(토)	녹화방송
2010 KBS 연예대상	'10. 12. 26(일)	생방송
송년특집 김승우의 승승장구	'10. 12. 29(수)	녹화방송
2010 KBS 연기대상	'11. 01. 01(토)	생방송

② 시정명령 내용

-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허가조건 위반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사. 보고사항**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전담반」에서의 논의결과와 방송 업계의 의견 등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제도개선 전담반」 논의사항 주요 내용

①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관련

- ▶ <A안> 의무재송신 범위를 '일부(KBS2)' 확대
- ▶ <B안> 의무재송신 범위를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한시적 확대

②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

- ▶ 지상파방송 재송신 시 **사업자간 적정한 대가 정산 기준 마련**을 추진
- ▶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11년말)후 방통위가 고시**

③ 「분쟁해결 절차 보완」 관련

- ▶ 향후 방송통신 통합법제 마련 시, 방송분쟁에 '재정' 제도 도입
- ▶ 현행 방송분쟁 '조정' 제도의 불응 절차 폐지 및 중대한 분쟁 발생시 '긴급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④ 「기타 정책·제도적 사항」 관련

- ▶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승인 제도 폐지

2)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한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 평가결과와 검토의견, OBS 역외재송신 업무처리 방향 등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10.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지역 13개 SO에게 OBS 역외재송신을 승인하면서 나머지 SO(14개)는 시장상황을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

○ 주요 내용

① 검토의견

- OBS의 서울 지역 역외재송신 시, 유료방송플랫폼 시장, 지상파방송채널 재송신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방송프로그램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다만, 방송광고 시장에서는 지상파방송 3사 보다는 PP 광고수익을 잠식하여 취약 PP들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PP의 전체 광고 수익('09년 7,548억원)에서 차지하는 예상 광고잠식 비중은 최대 3.5%(261억원) 정도로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OBS가 서울지역으로 역외재송신 되더라도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② OBS 역외재송신 업무처리 방향

- '10. 2월 서울지역 SO(13개)에 대한 OBS 역외재송신 승인 의결 시의 결정에 따른 나머지 SO(14개)에 대한 OBS 역외재송신 허용 여부는
  -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과 관련한 방송시장 영향 평가 결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향후 서울지역 미승인 SO(14개)로부터 역외재송신 승인 신청이 있을시
  - 방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심사(제3항)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제5항) 후 최종적으로 개별 SO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
  - ※ 승인절차 : 사업자간 약정 → 승인신청(SO)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심사 → 의결
  - 심사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함
- 기존 역외재송신 승인 요건('08.1월)에 대하여는 네트워크 체제, 외국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개선방안을 논의함

### < 기존 역외재송신 승인 요건(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 '08. 1월) >

- 신청주체는 수도권 지역 SO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신청대상은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방송으로 한정하되, 다른 지역방송과의 네트워크 협약 또는 총국 형태로 전국적인 방송망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방송은 대상에서 제외

## 3)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 후보도시 선정 계획(안)에 관한 사항

- o '10년 ITU 전권회의(멕시코)에서 '14년 ITU 전권회의(이하 PP-14)의 한국 유치가 확정된 바, ITU 사무총국의 실사를 받아 개최도시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개최 후보도시 선정 추진을 위한 계획안을 김용수 국제협력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o 주요 내용

#### ① PP-14 개최 후보도시 선정 절차

- 4월 : 제안요청(RFP, Request For Proposal)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5월 : 심사위원회 구성(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인 포함 총 11인)
- 5월 : 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 ITU의 주요 심사항목 및 지자체의 행사 기여의지 등을 평가한 후, 상위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를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

- 5월 : ITU 사무총국에 개최 후보도시 통보
- 우선순위 명시 없이 심사결과 상위 3개 지자체를 통보

② 심사위원회 구성 :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장(1인)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 심사회의를 주재하되, 심사(채점)에는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10인)
- 정보통신 관련 산·학·연 임원, 대표(또는 부대표), 교수
-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관련 기관의 전문가
- 간사(1인) :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관
- ※ 심사회의를 보좌하되, 심사(채점)에는 참여하지 않음

③ 심사항목 및 배점

부 문	심 사 항 목	배 점	
ITU 주요 심사항목	① 회의장 수 및 수용능력	15	70
	② 회의기간, 준비기간, 철거기간 동안 회의장 사용 가능 여부	15	
	③ 현 컨벤션 내·외부 시설 여건 / 보완 또는 대체방안 포함	5	
	④ 항공접근성 / 보완 또는 대체방안 포함	10	
	⑤ 시내 교통 편의성 / 보완 또는 대체방안 포함	5	
	⑥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다양성 / 보완 또는 대체방안 포함	15	
	⑦ 보안 및 안전	5	
지자체 기여의지 및 기존 경험	⑧ 지자체의 참여 및 행사 지원계획	15	20
	⑨ 국제회의 개최 경험, 지원 인력 확보 및 운영방안	5	
기 타	⑩ 문화·환경 여건 등 / 보완 또는 대체방안 포함	5	10
	⑪ 프레젠테이션 및 기타 특장점	5	
<b>합 계</b>		<b>100</b>	

※ ①, ②의 경우, ITU의 시설요건만 만족하면 만점(총 30점)을 부여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3. 23(수),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2:00)**